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3. 29.]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956호, 2016. 3. 29.,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96조에 따른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7., 2012. 7. 1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상호 교환, 유학 등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제4조(지원대학) 지원대학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외국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자격) 본교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 수학 하고자 하는 학생(이하"지원자"라 한다)은 학칙에 의거 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2.7 이상, 대학원과정은 3.3 이상인 자로 한다.

제6조(수학신청) ① 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소속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1. 수학신청원 (별지 1호 서식)
2. 지도교수 추천서
- 3.-4.<삭제> 2002. 1. 7

②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 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 1. 7>

제7조(수학허가) 수학은 소속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

제8조(등록 및 학기의 인정) ①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중 학생교환협약에 따라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그 외의 대학에 수학하는 경우는 당해 외국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② 휴학기간 중에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학점은 인정할 수 있되, 등록학기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교과목의 이수) 이수 교과목은 전공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학신청의 취소) ① 수학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의 수학신청 취소원을 본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수학신청 취소 절차는 이 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 ③ 계절수업 수학 취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취득학점)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 대학원과정은 과정별로 12학점,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 1. 7, 2009. 8. 7.>

②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학점을 포함하여 소속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개정 2002. 1. 7>

제12조(수학기간)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학사과정은 4학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학기 이내로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4학기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계절학기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1. 7>

제13조(학점의 인정 기준) 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개정 2003. 7. 28>

②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 7. 28>

③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과 전공관련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4조가 정하는 학점인정 심의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3. 7. 28>

제14조(학점인정 절차) ① 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기록 등 관련서류를 지도교수와 소속대학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대학(원)장은 소속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

③ 총장은 전항의 신청내용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적부에 "○○대학(교) 수학 이수학점"임을 표시하여 등재한다.

제3장 외국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15조(지원자격)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대학에 재적 중인 자로서 해당 학위과정을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제16조(지원시기)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 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 1. 7>

제17조(수학허가) 지원자는 소정의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와 구술고사 및 면접 등 심사절차를 거쳐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절수업만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정원) ① 학사과정 정규학기 수학 학생(교환·방문, 공동·복수학위 학생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당해 학과(부)정원의 25%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 수학정원은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과정 정규학기 수학 학생(교환·방문, 공동·복수학위 학생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당해 학과(부)정원의 50%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 수학정원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원이 학과(부)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은 대학(원)은 해당 대학(원) 전체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19조(등록 및 수업료) ① 정규학기 수학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 중 학생교환 협약에 따라 상호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업료는 납입하지 아니하나 소정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 2. 12.]

② 수업료는 본교 재학생의 해당 학기 납입금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학점 수를 기준으로 수업료를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3. 2. 12.]

③ 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계절수업 수학학생은 본교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1조(수학허가의 취소)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취득학점) 학기당 취득학점과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 및 수학기간은 소속대학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2. 1. 7> ①-②<삭제> 2002. 1. 7

제23조 <삭제> 2002. 1. 7

제24조(취득학점의 처리) ① 취득학점은 본교의 학칙 및 학업성적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전항의 취득학점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5조(수강증의 발급) 수학이 허가된 학생에게는 별지 3호 서식의 수강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시설물의 이용) 수학 학생에게는 도서관, 실험실습실, 기숙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02035호, 2016. 3.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